

1. 개정이유

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면제 대상의 범위를 조정하고, 여권사실증명신청서 및 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보완하는 등 현행 법령을 정비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면제 대상 범위 조정(안 제15조제1항)

- 1)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면제 대상을 여권사용 제한 등의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조정

나. 기타 서식 정비

- 1) 여권사실증명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란을 추가하는 등 서식 보완
(안 별지 제4호 서식)
- 2)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안내 문구 정비
(안 별지 제5호 서식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여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본문 중 “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”을 “여권사용제한 등의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사람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.부터 시행한다.

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(현행)

여권 명의인 정 보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	
	전화번호			
	여권번호 (발급일)	※ 여권 사본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		

사실증명서 유 형 ※ 해당란 [√] 표시	신청여부	신청서류	부 수
	[]	여권 발급기록 증명서(국문)	_____부
	[]	여권 발급기록 증명서(영문)	_____부
	[]	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(국문) ※ 여권번호 : _____	_____부
	[]	여권 사본 증명서	_____부
	[]	여권정보증명서	_____부

본인은 「여권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여권 발급과 관련한 사실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또는 대리인)

(서명 또는 인)

외 교 부 장 관 귀 하

첨부 서류

여권명의인 대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1. 위임장 1부
2. 여권명의인의 인감증명서, 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

처 리 절 차

작 성	➔	접 수	➔	처 리	➔	발 급
-----	---	-----	---	-----	---	---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(개정)

여권 명의인 정 보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	
	전화번호			
	여권번호 (발급일)	※ 여권 사본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		

사실증명서 유 형 ※ 해당란 [√] 표시	신청여부	신청서류	부 수
	[]	여권 발급기록 증명서(국문)	_____부
	[]	여권 발급기록 증명서(영문)	_____부
	[]	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(국문) ※ 여권번호 : _____	_____부
	[]	여권 사본 증명서 ※ 하단 언어 중 선택 (영어/중국어/일본어/프랑스어 독일어/스페인어/러시아어/아랍어)	_____부
	[]	여권정보증명서(국문)	_____부
	[]	여권정보증명서(영문)	_____부

본인은 「여권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여권 발급과 관련한 사실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또는 대리인)

(서명 또는 인)

외 교 부 장 관 귀 하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·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(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를 말합니다)를 제출해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여권 명의인)

(서명 또는 인)

첨부 서류

여권명의인 대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1. 위임장 1부
2. 여권명의인의 인감증명서, 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

처 리 절 차

작 성	➔	접 수	➔	처 리	➔	발 급
-----	---	-----	---	-----	---	---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부분

여권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(현행)

※ 검은색 펜으로 색깔있는 부분에만 적습니다.

신 청 종 류		☐ 구 여권번호 기재 ☐ 출생지 기재		※ 해당란에 [√] 표시를 합니다.						
한 글 성 명										
여 권	여권번호							구 여권번호		
	발급일자	년 월 일								
출 생 지										(시/군 단위)
주 소										
전화번호										
위의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, 「여권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여권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합니다.										
										년 월 일
신청인(여권명의인)										(서명 또는 인)
외 교 부 장 관 귀 하										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										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·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(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를 말합니다)를 제출해야 합니다.										년 월 일
신청인(여권 명의인)										(서명 또는 인)
첨 부 서 류										
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의 유효한 여권										
접수번호									(영수확인)	
특이사항										
심 사 란	접 수 자	심 사 자	발 급 자							
처 리 절 차										
접 수	➔	심 사	➔	처 리	➔	여 권 교 부				

부분

여권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(개정)

※ 검은색 펜으로 색깔있는 부분에만 적습니다.

신 청 종 류		☐ 구 여권번호 기재 ☐ 출생지 기재		※ 해당란에 [√] 표시를 합니다.	
한 글 성 명					
여 권	여권번호				구 여권번호
	발급일자				
출 생 지		(시/군 단위)			
주 소					
전화번호					

위의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, 「여권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여권 기재 사항변경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여권명의인)

(서명 또는 인)

외 교 부 장 관 귀 하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**담당**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**등**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·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(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를 말합니다)를 제출해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여권 명의인)

(서명 또는 인)

첨 부 서 류

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의 유효한 여권

접수번호				(영수확인)
특이사항				
심 사 란	접 수 자	심 사 자	발 급 자	

처 리 절 차

접 수	→	심 사	→	처 리	→	여 권 교 부
-----	---	-----	---	-----	---	---------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5조(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신청 등)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·체류를 금지(이하 “여권사용제한등”이라 한다)한 국가나 지역을 여행하기 위하여 여권의 사용과 방문·체류(이하 “예외적 여권사용등”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예외적 여권사용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<u>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</u> 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.	제15조(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신청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다만, <u>여권사용제한 등의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사람</u> 은 ----- -----.
② ~ ③ (생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